

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793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년 11월 20일

발의자 : 금광연 의원

1. 제안이유

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전문위원의 역할 및 정책지원관의 정수 등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일부 용어 수정(안 제2조, 제3조 및 제4조)
- 나. 의회사무국장 직급명 수정(안 제3조)
- 다. 전문위원 관련 조항 명확화(안 제4조)
- 라. 관련 조례 및 규칙 제명 명확화(안 제5조 및 제6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- 나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덧붙임
- 다. 관계법령 발췌서 : 해당없음
- 라. 기타사항 : 해당없음
- 마. 입법예고 결과
 - 입법예고기간 : 2023. 11. 30. ~ 12. 5.
 - 의견내용 : 의견접수 결과 수정사항 있을 시 재배부 예정

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하남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(이하 “정원”이라 한다)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의 제목 “(직무)”를 “(사무국의 설치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지휘·감독을 받아”를 “명을 받아 의정활동 지원 및”으로 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지방행정·기술서기관”을 “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지휘·감독을”을 “명을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의원을 보좌하고 의장”을 “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의안”을 “소속 위원회의 의안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 및 제2항에 따른”으로, “일반적 사무에 대해”를 “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”으로 한다.

제4조의2제1항 중 “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의원 정수의 4분의 1 범위에서, 2023년 1월 1일부터는”을 “위하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 2호 중 “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7조”를 “법 제47조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이하”를 “이하의”로, “7급 상당의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”를 “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”로 한다.

제5조 중 “정원은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”를 “정원은 「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」”로 한다.

제6조 중 “조례”를 “조례 시행”으로, “하남시의회직제규칙”을 “「하남시의회 직제 규칙」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<u>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하남시의회(이하 “의회“라 한다)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(이하 “정원“이라 한다)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	<p>제1조(목적) <u>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하남시의회(이하 “의회“라 한다)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(이하 “정원“이라 한다)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
<p>제2조(직무) ① (생략)</p> <p>② 사무국은 의장의 <u>지휘·감독</u>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.</p>	<p>제2조(사무국의 설치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명을 받아 의정활동 지원 및</u> -----.</p>
<p>제3조(사무국장) ① (생략)</p> <p>② 사무국장은 <u>지방행정·기술서기관</u>으로 보한다.</p> <p>③ 사무국장은 의장의 <u>지휘·감독</u>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</p>	<p>제3조(사무국장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</u>--.</p> <p>③ ----- <u>명을</u> -----.</p>
<p>제4조(전문위원) ① <u>의원을 보좌</u>하고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</p>	<p>제4조(전문위원) ① <u>소속 위원회</u>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-</p>

필요한 직원을 둔다.

② 전문위원은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.

③ 전문위원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 사무국장의 지휘·감독을 받는다.

제4조의2(정책지원관) 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의원 정수의 4분의 1 범위에서, 2023년 1월 1일부터는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둔다.

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.

1. (생략)

2.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7조에 따른 의결사항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지원

3. ~ 6. (생략)

③·④ (생략)

⑤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 일반직지방공무원 또는 7급 상당의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.

-----.

② ----- 소속 위원회의 의안-----.

③ -----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-----
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-----.

제4조의2(정책지원관) ① -----
----- 위하여 -----

-----.

② 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법 제47조-----

3. ~ 6. (현행과 같음)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 이하의 -----
-----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한다.

<p>제5조(직원의 정원)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<u>정원은 하남시지방 공무원정원조례</u>로 정한다.</p>	<p>제5조(직원의 정원) ----- ----- <u>정원은 「하남시 행 정기구 및 정원 조례」</u> --.</p>
<p>제6조(시행규칙) 이 <u>조례</u>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장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은 <u>하남시 의회직제규칙</u>으로 정한다.</p>	<p>제6조(시행규칙) -- <u>조례 시행</u>-- ----- ----- <u>「하남시 의회 직제 규칙」</u>-----.</p>